

# 인천지방법원 2019. 9. 20.선고 2019고단4468 판결

【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의료법위반】, [미간행]

## 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 외 1인

【검 사】 남계식(기소), 전유경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예우 외 1인

## 【주문】

피고인 1 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, 피고인 2 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.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.

다만, 피고인 2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2 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0호, 증 제59호 내지 증 제66호를 피고인 1 로부터, 증 제53호 내지 증 제58 호, 증 제67호를 피고인 2 로부터 각 몰수한다.

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## [이유]

1. 피고인 1 . 피고인 2 의 공동범행

피고인 1 은 안산시 (주소 1 생략) 에서 '  $\triangle \triangle \triangle \triangle \triangle$  (영문 상호 생략) '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.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얼굴 주름을 펴 주는 효과가 있는 성형 의료시술(일명 '실리프팅', 이하 '실리프팅'이라 함)을 해주는 방법으로 시술 교육을 하고 수강생들에게 위 시 술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.

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. 6. 23. 15:00경 서울 (주소 2 생략) 공소외 1 의 사무실에서, 피부관리실 또는 미 용실 등을 운영하는 공소외 2 등 9명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, 피고인 1 은 위 공소외 2 등에게 실리프팅 시술법을 교육한 다음, 피고인 2 와 함께 교육생 중 공소외 3 의 양쪽 턱 부위에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하고 턱 부위에 실(매선)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. 6.경부터 이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.

2. 피고인 1 의 단독범행

가.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

피고인은 2019. 1. 중순경 안산시 (주소 1 생략)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, 피부관리실 또는 미용실을 운



영하는 공소외 2 의 코 부위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실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. 1. 23.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성형의료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.

### 나. 의료법위반

- 1)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. 5. 초순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수술실에서,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이마, 콧등, 입술 부위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실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하였다.
- 2)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. 4. 7.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○○○○ 병원 수술실에서,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복부에 리포석션기(지방흡입용 의료기기)를 찔러 피하지방을 흡입하는 의료시술을 하였다.
- 1. 피고인 1 의 법정진술
- 1. 피고인 2 의 일부 법정진술
- 1. 피고인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
- 1. 공소외 4 , 공소외 2 , 공소외 5 , 공소외 6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- 1. 공소외 3 의 각 진술서
- 1. 압수조서, 압수목록
- 1. 카카오톡 대화 내역
- 1.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, 수사보고(검거 경위 및 현장 상황, 관련자 인적사항 등)
- 1. 주장의 요지

피고인 2 는 피고인 1 과 부정한 의료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, 피고인 1 의 다른 수강생들과 마찬가지로 수강생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.

#### 2. 판단

다음과 같은 이유(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)에서 피고인 2 는 피고인 1 의 단순한 수강생으로 보기 어렵고, 판시 제1항 부정의료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1 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- 1) 피고인 2 는 판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 공소외 3 을 시술모델로 이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소외 3 을 섭외한 것으로 보인다( 공소외 3 의 진술서 및 피고인 2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 '공소외 3 을 교육이라 돈 받지 않고 초청하였다'는 취지의 진술기재).
- 2) 피고인 2 가 공소외 3 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중 "입금계좌 우리은행 (계좌번호 생략) 입금자 △△△△ △ / 피고인 1 감사합니다" 부분(증거기록 170쪽)은 단체전송 내용으로 보이는데, 피고인 2 가 수강생의 지위에 있었더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입금안내 문자를 보낼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.
- 3) 판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, 피고인 2 가 공소외 3 에게 시술하는 장면을 다른 수강생들이 집중하여 보고 있고, 일부 수강생은 시술내용을 요약·정리까지 하기도 하였으며, 수강생 공소외 2 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'피고인 2 가 피고인 1 과 항상 같이 다니는 것으로 보아 동업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'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.
- 4) 피고인 2 는 피고인 1 과 함께 2018. 6. 1., 같은 해 7. 20., 같은 해 8. 14. 및 같은 해 9. 14. 판시 의료 업과 관련하여 베트남에 출국하였고, 그 경비를 피고인 1 로부터 지원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, 피고인 2 가수강생의 지위에 있었더라면 출장 경비를 피고인 1 로부터 지원받을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.
-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- 가. 피고인 1 :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, 의료법 제27조 제1항 , 형법 제30조 주1) (영리목 적 부정의료행위의 점, 유기징역형 주2) 선택), 각 의료법 부칙(2016. 12. 20. 법률 제14438호) 제1조 본문, 구 의료법(2019. 4. 23.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7조 제1항 제2호 , 제27조 제1항 (무면허의료행위의 점, 징역형 선택)
- 나. 피고인 2 :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, 의료법 제27조 제1항 , 형법 제30조 , 유기징역형



선택

1. 경합범가중

피고인 1: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3호, 제50조 [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(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)]

1. 작량감경

피고인 2: 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3호 (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)

1. 노역장유치

피고인들: 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집행유예

피고인 2 : 형법 제62조 제1항 (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)

1.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: 형법 제62조의2

1. 몰수

피고인들 :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

1. 가납명령

피고인들: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1. 피고인 1

가.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

징역 2년 ~ 35년

나.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

1) 기본범죄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

가) 유형의 결정

식품·보건범죄 〉 부정의료행위 〉 [제2유형]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

나)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

기본영역(징역 1년 6월 ~ 3년)

2) 경합범죄(의료법위반)

가) 유형의 결정

식품·보건범죄 〉 부정의료행위 〉 [제1유형]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

나)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

기본영역(징역 8월 ~ 2년)

3)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

징역 1년 6월 ~ 4년

4)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

징역 2년 ~ 4년(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)

다. 선고형의 결정

○ 불리한 정상: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비교적 대규모로 보이고, 베트남, 일본 등 외국에서의 범행까지도 모의한 정황이 엿보인다. 피고인 1 은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시술교육을 진행하는 등 판시 부정의료행위가 전파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도 있었다. 피고인 1 에게 이미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, 비록 이 종범죄이기는 하지만 2차례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.

○ 유리한 정상 : 피고인 1 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. 피고인 1 은 시술대상 자 중 공소의 5 , 공소의 3 , 공소의 2 , 공소의 7 과 합의하여, 위 시술대상자들이 피고인 1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.

○ 위 불리한 정상,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·성행·환경, 범행의 동기·수단·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



같이 형을 정한다.

### 2. 피고인 2

가.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

징역 1년 ~ 15년

- 나.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
- 1) 유형의 결정
- 식품·보건범죄 〉 부정의료행위 〉 [제2유형]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
- 2)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
- 기본영역(징역 1년 6월 ~ 3년)
- 다. 선고형의 결정
- 불리한 정상 :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2 의 가담 부분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. 그럼에도 피고인 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.
- 유리한 정상 : 피고인 2 는 시술대상자 공소외 3 과 합의하여, 공소외 3 이 피고인 2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. 피고인은 초범이다.
- 위 불리한 정상,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·성행·환경, 범행의 동기·수단·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[별지 생략]

판사 이상욱

주1) 피고인 2와 공모한 부분에 한함.

주2) 벌금형은 필요적 병과이다. 이하 같다.